

신한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신한온라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체비밀번호”란 계좌이체시 이용자의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2. “보안매체”란 은행이 서비스 계약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OTP 카드(1회용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말한다
3. “공인인증서”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이 유무선네트워크, 통신망 등을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5. “이용자 ID 및 이용자비밀번호”란 서비스 접속을 위한 이용자 식별 정보로서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가 신청 한다.
6.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전자적 장치

①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휴대폰, TV, 스마트기기 등

나. 폰뱅킹 : 전화, 휴대폰 등

②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전자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조회, 자금이체, 계좌신규개설 및 해지, 대출, 외환, 사고신고, 공과금납부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제 5 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신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타 전자적 장치의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②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의 각종 조회, 사고신고, 자동이체, 공과금납부 및 이용자 연락처정보 등록은 제 1 항의 신청절차없이 이용 가능하다.

제 6 조 이용자 확인방법

① 이용자가 제 5 조 제 2 항의 ‘신청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계좌번호 (또는 카드번호)와 계좌비밀번호(또는 카드비밀번호)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제 5 조 제 1 항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폰뱅킹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2. 인터넷뱅킹 : 이용자 ID, 이용자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제 7 조 계좌이체 한도

- ① 이용자의 통합이체한도는 1일 5억원 1회 1억원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폰뱅킹 이체한도는 1일 2억 5천만원 1회 5천만원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단, 기타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지정된 통합이체한도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단, 예금신규가입, 대출상환, 예금의 해지, 은행의 이자지급 등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폰뱅킹 이체한도는 통합이체한도 범위 이내에서 별도 운영한다.
- ④ 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이체한도의 증액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좌이체 이용계좌

- ① 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금계좌 추가등록서비스를 영업점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금계좌를 추가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대상계좌를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 9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이용자의 이체지시는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예약이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은 이체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 중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 전에 지급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2. 이체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접수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3. 폰뱅킹의 경우 상담원에게 이체지시를 할 수 있다

4. 출금계좌에서의 출금한도는 이체시점까지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으로 한다.
5. 예약이체 지정일은 6개월 이내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제 10 조 예금 및 신탁계좌개설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예금(이하 “근거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예금 및 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신규개설할 수 있다
- ② 연결계좌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거계좌로 입금된다. 단, 담보제공되어 있거나 납입지연 등으로 자동해지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동해지 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연결계좌의 중도해지는 예금주가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해지하여야 한다.
- ④ 연결계좌의 적립금 납입 및 이자지급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자동이체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서비스를 통해 신규개설한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다.
단, 영업점을 통해 통장을 발행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한 중도해지와 만기시 자동해지는 처리되지 않는다.
- ⑥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대신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해지도 가능하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11 조 대출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약정은 서류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 6 조의 이용자확인방법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

제 12 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가 각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또는 OTP를 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고객이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2. 서비스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3.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및 비영업일
4.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 가능함

②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전항 1호 이용자비밀번호 또는 2호의 장기미사용 이용정지 고객은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 확인 및 전자서명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재개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수료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의 인출계좌에서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 단,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한다.

제 14 조 비밀번호 등의 관리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이체비밀번호 및 이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해외에서 해외영업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로 이체비밀번호 및 이용자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체비밀번호는 계약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②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누적하여 제 12 조 ①항 1호에서 정한 횟수 이상 오류 입력시에는 은행에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기화 또는 비밀번호 재등록을 위한 서면신청을 한 후 다시 등록한다. 단, 이용자비밀번호는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 확인 및 전자서명 등의 절차에 의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제 15 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6 조 서비스 정지, 해지, 변경, 사고신고

- ①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은행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 ②이용자는 서비스 또는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이용자가 이용자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보안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영업일 종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8 조 준용 규정 및 약관변경

-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yessign 서비스이용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별표 1] 이체수수료

구 분	당행이체	타행이체	비고
폰뱅킹	ARS	무료	5 억원초과시 5 억원당
	폰뱅킹 상담원	무료	5 억원초과시 5 억원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무료	500 원	5 억원초과시 5 억원당

※ 기타 세부기준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